

#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690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  
발의자 : 서영교 · 이수진 · 이해식  
이성윤 · 박지혜 · 박홍배  
조계원 · 이강일 · 윤준병  
김영환 · 양부남 · 정준호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가 지속 제기되었음.

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산에 관하여 설명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564조 등).



##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4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3.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

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때

제658조 중 “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”를 “허  
위”로 한다.

제6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  
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321조 또는 제578조의7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 
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별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  
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 
에 따른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64조(면책허가)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의2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64조(면책허가) ①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5의3. 제321조 및 제578조의7  <u>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</u>  <u>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</u>  <u>을 하지 아니한 때</u></p>
<p>6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제658조(설명의무위반죄)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<u>정당한</u>  <u>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</u>  <u>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</u>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58조(설명의무위반죄) -----  -----  -----<u>허위</u>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
<p>제660조(과태료)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60조(과태료) ① 제321조 또는 제578조의7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~ ⑤ (현행 제1항부터 제4</p>
<p>① ~ ④ (생 략)</p>	

	향까지 와 같음)
--	-----------